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안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78
----------	-----

제안연월일 : 2007. 4.

제안자 : 조례장비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의 제명을 어문규범에 맞게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본문 중에 인용되는 법령과 자치법규명에 낫표를 사용하여 시민들이 자치법규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자치법규의 제명을 어문규범에 맞게 띄어쓰기로 표기하도록 함 (안 제2조)
- 자치법규의 본문 중에 인용되는 법령과 자치법규명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도록 함(안 제3조)

□ 참고사항

- 어문규범(「한글맞춤법에 관한 규정」)
- 「법령입안심사기준」(법제처)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의 제명을 어문규범에 맞게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본문 중에 인용되는 법령과 자치법규명에 낫표를 사용하여 시민들이 자치법규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명 띄어쓰기)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의 제명을 띄어쓰기로 표기 하며, 그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법령과 자치법규명 표시 변경 등)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의 내용 중 인용되는 법령과 자치법규명에 낫표(「」)를 사용하며, 자치법규의 제·개정시 정비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자치법규 제명 띄어쓰기 기준(제2조, 제3조 관련)

1. 자치법규의 제명은 단어별로 띄어 쓴다.
 - 가. 자치법규 제명에 포함된 조사 뒤, 어미 뒤, 부사 앞뒤 및 의존 명사 앞(의존 명사 뒤에 조사가 오지 않으면 의존 명사 뒤에서도 띄)에서는 반드시 띄어 쓴다.
 - 나. 조사, 어미, 부사 및 의존 명사 없이 복합명사로 이루어진 제명은 최대 8음절까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다. 조직 또는 단체(공단, 공사, 조합 등) 및 기금 등의 명칭을 포함하는 제명의 경우에는 8음절을 초과하더라도 붙여 쓸 수 있다.
 - 라. “조례”는 하나의 명사로서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마. 제명의 앞부분에 오는 “인천광역시(의회)” 등의 명칭은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직, 단체 및 기금 등의 명칭에서는 붙여 쓸 수 있다.

2. 자치법규의 본문 중에서 다른 법령 및 자치법규의 제명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띄어쓰기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은 정부에서 공포 시행하는 바에 따라 표기한다.
 - 가. 인용되는 법령 등의 제명 앞뒤에는 낫표(「」)를 사용하여 본문의 다른 부분과 구별할 수 있도록 한다.
 - 나.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 등의 명칭이 아닌 경우, 즉 자치법규집에서의 조례 제목, 개정지시문, 의결주문, 공포문 등에서는 낫표를 부기하지 아니한다.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글맞춤법에 관한 규정(문화관광부)○ 법령입안심사기준(법제처)
관련법규 정비대상	
관련자료	

관 계 법 령

□ 한글맞춤법에 관한 규정(1988. 1. 19. 문화관광부 고시)

제 5 장 띄어쓰기

제 1 절 조사

제41항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꽃이 꽃마저 꽃밖에 꽃에서부터 꽃으로만
꽃이나마 꽃이다 꽃입니다 꽃처럼 어디까지나
거기도 멀리는 웃고만

제 2 절 의존 명사,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및 열거하는 말 등

제42항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아는 것이 힘이다. 나도 할 수 있다.
먹을 만큼 먹어라. 아는 이를 만났다.
내가 뜻한 바를 알겠다. 그가 떠난 지가 오래다.

제43항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한 개, 차 한 대, 금 서 돈, 소 한 마리,
옷 한 벌, 열 살, 조기 한 손, 연필 한 자루,
머선 한 죽, 집 한 채, 신 두 켤레, 북어 한 켤,

다만,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숫자와 어울리어 쓰이는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

두시 삼십분 오초, 제일과, 삼학년,
육층, 1446년 10월 9일, 2대대,
16동 502호, 제1실습실, 80원,
10개, 7미터,

제44항 수를 적을 적에는 ‘만(萬)’ 단위로 띄어 쓴다.

십이억 삼천사백오십육만 칠천팔백구십팔
12억 3456만 7898

제45항 두 말을 이어 주거나 열거할 적에 쓰이는 다음의 말들은 띄어 쓴다.

국장 겸 과장 열 내지 스물 청군 대 백군
책상, 걸상 등이 있다 이사장 및 이사들 사과, 배, 귤 등등
사과, 배 등속 부산, 광주 등지

제46항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날 적에는 붙여 쓸 수 있다.

그때 그곳 좀더 큰것 이말 저말 한잎 두잎

제 3 절 보조 용언

제47항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씀도 허용한다.(ㄱ을 원칙으로 하고, ㄴ을 허용함.)

ㄱ	ㄴ
불이 꺼져 간다.	불이 꺼져간다.
내 힘으로 막아 낸다.	내 힘으로 막아낸다.
어머니를 도와 드린다.	어머니를 도와드린다.
그릇을 깨뜨려 버렸다.	그릇을 깨뜨려버렸다.
비가 올 듯하다.	비가 올듯하다.
그 일은 할 만하다.	그 일은 할만하다.
일이 될 법하다.	일이 될법하다.
비가 올 성싶다.	비가 올성싶다.
잘 아는 척한다.	잘 아는척한다.

다만,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앞말이 합성 동사인 경우, 그리고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적에는 그 뒤에 오는 보조 용언은 띄어 쓴다.

잘도 놀아만 나는구나!	책을 읽어도 보고…….
네가 덤벼들어 보아라.	강물에 떠내려가 버렸다.
그가 올 듯도 하다.	잘난 체를 한다.

제 4 절 고유 명사 및 전문 용어

제48항 성과 이름, 성과 호 등은 붙여 쓰고, 이에 덧붙는 호칭어, 관직명 등은 띄어 쓴다.

김양수(金良洙)	서화담(徐花潭)	채영신 씨
최치원 선생	박동식 박사	충무공 이순신 장군

다만, 성과 이름, 성과 호를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띄어 쓸 수 있다.

남궁역/남궁 역	독고준/독고 준
황보지봉(皇甫芝峰)/황보 지봉	

제49항 성명 이외의 고유 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단위별로 띄어 쓸 수 있다.(ㄱ을 원칙으로 하고, ㄴ을 허용함.)

ㄱ	ㄴ
대한 중학교	대한중학교
한국 대학교 사범 대학	한국대학교 사범대학

제50항 전문 용어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쓸 수 있다.(ㄱ을 원칙으로 하고, ㄴ을 허용함.)

ㄱ	ㄴ
만성 골수성 백혈병	만성골수성백혈병
중거리 탄도 유도탄	중거리탄도유도탄

□ 법령입안심사기준(법제처)

제 2 장 법령의 용자(用字) 및 용어

2. 띄어쓰기의 기준

(1) 법령문에 있어서 띄어쓰기의 기준은 문화관광부에서 제정한 한글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준말은 쓰지 아니하기로 하고(예: 위해 → 위하여, 코자 → 하고자, 앓고 → 아니하고 등), 법령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2)와 같은 예외를 인정한다.

(2) 법령문 특유의 띄어쓰기

(가) 법령의 제명

1) 법령명은 단어 별로 띄어 쓴다.

○ 법령 명칭에 포함된 조사 뒤, 어미 뒤, 부사 앞뒤, 의존 명사 앞(의존 명사 뒤에 조사가 오지 않으면 의존 명사 뒤에서도 띄)에서 반드시 띄어쓰기로 표기

○ 조사, 어미, 부사, 의존 명사가 없이 명사(복합명사)만으로 이루어진 법령명은 최대 8음절까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국립국어연구원의 의견에 의하면, 보통 사람이 한 번에 독해할 수 있는 적정 한 음절의 수는 8음절 내외라고 함.

2) 예외적으로 8음절을 초과하는 복합명사로 이루어진 조직 또는 단체(공단, 공사, 조합 등) 및 기금의 명칭을 포함하는 법령명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명칭을 붙여서 사용하고 있고, 하나의 명사로 인식되는 것이 통례이므로 붙여 쓴다.

예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한국국제교류재단법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3)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등 도 하나의 명사의 성격을 갖고, 명칭과 같이 붙여 쓰는 경우 8음절 이상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과 달리 “시행령”, “시행규칙”은 띄어쓰기로 표기한다.

4) 법령의 본문 중에서 법령명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령명 앞 뒤에 낫표(「」)를 사용하여 본문의 다른 부분과 구별할 수 있도록 한다.

○ 일반 본문의 문장 내용과 구분할 수 있고, 법의 고유명사로서의 특성을 표시하기 위하여 낫표를 사용한다. 이는 법령명의 띄어쓰기로 인하여 하나의 고유한 법령명이 아닌 어떤 사항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로 오해될 소지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예컨대 액화석유가스에 관한 법률 ← ‘액화석유가스에 관한 법률’이 아닌 ‘액화석유가스’에 관련된 일반적인 법률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될 우려)

- 띄어쓰기 대상이 아닌 붙여쓰기로 표기하는 법령의 경우에도 본문에서 인용되는 경우 예외 없이 앞 뒤에 낫표를 사용한다.

예시) 「민법」 「증권거래법」 「도로교통법」

-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명이 아닌 경우, 즉 법령집에서의 법령 제목, 개정지시문, 의결주문, 공포문 등에서는 낫표를 부기하지 아니한다.

예시)

-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일부[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지시문)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전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의결주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통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전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공포문)

(참고) 제명 띄어쓰기 표기의 예시

① 조사와 어미를 포함한 법령명

- 실화책임에관한법률 → 「실화책임에∨관한∨법률」

② 부사를 포함한 법령명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 ‘미술관진흥법’은 모두 명사이지만, ‘진흥법’이 ‘박물관’과 ‘미술관’ 양쪽에 걸리는 성분이므로, ‘미술관’과 ‘진흥법’을 띄어 쓰도록 함.

③ 의존 명사를 포함한 법령명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④ 부사, 의존 명사, 조사, 어미를 포함한 법령명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호에의한시설과구역및 대한민국에있어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따른국가및 지방자치단체의재산의관리와처분에관한법률

→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따른∨시설과∨구역∨및∨주한미군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따른∨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 재산관리와∨처분에∨관한∨법률」

⑤ 8음절을 넘는 명사로 이루어진 법령명

-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 ‘수도권 매립지관리공사’의 경우 10음절이나, 하나의 명칭으로 사용되는 복합명사이므로 예외적으로 붙여쓰기 인정)

(나) 법령의 조항을 인용하는 경우, 법령명과 조항 사이는 띄어 쓰고, 조·항·호·목의 명칭은 서로 붙여 쓰며, “본문”·“단서”, “전단”·“후단”, “각호”·“각목”의 표시는 그 앞에 있는 조·항·호·목의 명칭으로부터 띄어 쓴다.

○○법 제3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
법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

(다) “등”의 용례

- 1) 한글맞춤법에 의하면, “등”은 ① 앞의 단어와 붙여 씀으로써 복수를 나타내는 접미사로 사용되는 경우(예 : “A·B·C등”에서의 “등”은 A·B·C 3가지가 복수라는 의미로, A·B·C 외에 다른 것은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A뿐인데 “A등”으로 붙여 쓰는 것은 맞춤법에 어긋난다)와 ② 앞의 단어와 띄어 씀으로써 앞의 단어 또는 단어군과 유사한 다른 것을 나타내는 불완전명사로 사용되는 경우(예 : “A 등”이라고 하면 A 외에 그와 유사한 다른 것이 있다는 의미이다)가 있다.
- 2) 법령에서는 “등”이 접미사로 사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이 불완전명사로 사용된다고 할 수 있다(법령에서 접미사로서의 “등”은 불필요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 3) 다만, 나열된 단어를 약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붙여 쓰기로 한다.

허가 등
허가·인가·신고 등
허가·인가·등록·신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